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23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박성훈·김대식·이헌승

고동진 • 이상휘 • 박수영

김성원 · 박충권 · 이인선

정연욱 · 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국회 제출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지만,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

는 시점이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도,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그해 하반기부터이듬해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날이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 간 상 관관계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갈등까 지 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결국 세수 오차를 낳고 있 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이에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제33조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	등) ①				
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					
도 개시 <u>120일</u> 전까지 국회에	<u>90일</u>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①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					
도 개시 <u>120일</u> 전까지 다음 각	<u>90일</u>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					
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					
계연도 개시 <u>120일</u> 전까지 국	<u>90일</u>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				
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	출 등) ①				

의	규정에	따른	- 수요	L항목	단	위
로	마련	된 기]금운	용계획	인	-을
회기	계연도	개시	<u>120</u>	<u>일</u> 전	·크카	-ス]
국호	회에 제	출하여	하	한다.	0]	경
우	중앙관	난서의	장이	관리	하	는
기급	금의 기	금운-	용계획	안에	계	상
된	국채발	행 및	차입	급금의	한	도
액은	은 제20)조의	규정여	에따	른	예
산총	총칙에	규정さ	하여야	: 한다		

② (생 략)

<u>90일</u>
② (현행과 같음)